

의안번호	2212189
의 퇴 인	조지연 의원
회 답 일	2025. 11. 11.
추계번호	25F4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및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2030년말까지 4년 연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은 2027년 1조 1,145억원, 2030년 1조 4,895억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5조 2,483억원(연평균 1조 3,1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개별소비세 등, 2027~2030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친환경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 109조)	-11,145	-12,582	-13,862	-14,895	-52,483	-13,1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5 신설)	추	정	곤	란		
계	-11,145	-12,582	-13,862	-14,895	-52,483	-13,121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0조의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 ※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 공제요건: ① 내국인에 의해 제조된 자동차 ②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동차 ③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중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중 이상인 자동차 - 공제율: 제품 생산비용의 15% - 공제한도: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소득세의 30% - 적용기한: 2030.12.31.	

2	안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자동차 70만원, 전기자동차 3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400만원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5%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0.12.31.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0조의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	○ 공제대상인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비용 산정방식 등에 대한 규정의 미비와 생산비용 규모 등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2	안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연장된 일몰기간을 고려하여 2027~2030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2024년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실적에 추계기간 동안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증가율 및 친환경 자동차 평균 공급가액에 따른 개별소비세 예상 감면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정밀한 추계를 위해서는 연도별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은 친환경 자동차 대

수, 감면액 구간별 친환경 자동차 대수 및 구간별 감면액 총계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의 습득에 한계가 있음

- 신규등록하는 친환경 자동차가 모두 국산차라고 가정하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승용자동차 기준판매비율(18%)만큼 차감하여 계산
-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분까지 추계
- 이외에도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
 - 친환경 자동차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향후 친환경 자동차 생산기업의 세액 및 생산비용 등을 추정해야 하나, 생산비용 산정방식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3. 상세 추계내역

(1) 조세지출 실적

- (감면실적)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실적은 2024년 5,893억원으로 나타남

[표 2]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750	1,085	1,470	2,108	2,408
	교육세	225	325	441	632	723
전기	개별소비세	490	700	1,613	1,984	2,057
	교육세	147	210	484	595	617
수소전기	개별소비세	142	167	208	137	68
	교육세	42	50	62	41	20
전체		1,796	2,537	4,278	5,497	5,893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친환경 자동차 등록 현황) 2025년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 등록대수는 2024년 대비 각각 12.7%, 37.4%, 50.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규 등록 추세가 연말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연간 등록대수 환산

[표 3]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2021~2025년

(단위: 대,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환산)
하이브리드	239,971	274,282 (14.3)	390,898 (42.5)	505,281 (29.3)	578,995 (12.7)
전기	71,482	123,772 (73.2)	115,756 (-6.5)	122,560 (5.8)	195,795 (37.4)
수소전기	8,465	10,174 (20.2)	4,326 (-57.5)	2,718 (-37)	5,456 (50.2)
합 계	319,918	408,228 (27.6)	510,980 (25.2)	630,559 (23.4)	780,245 (19.2)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2025년의 경우 1~9월까지의 신규등록대수를 12개월분으로 환산함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등록통계 월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친환경 자동차 등록 추이 전망) 2026년 이후 추계기간 동안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2022~2025년 전체 친환경 자동차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체감하는 점을 반영하여 산출한 예상 증가율에 따라 증가하고,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비중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 (친환경 자동차 평균 공급가액) 2024년 기준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승용) 평균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기준 공급가액은 연료별 승용자동차의 내수 판매실적¹⁾ 1~10위의 평균 공급가액(판매실적에 따른 가중치 적용)이나, 각 모델별 기본모델 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소추계되었을 수 있음

1) 자동차통계월보(2024년 12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표 4] 연료별 승용자동차 평균 공급가액: 2024년

(단위: 만원)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3,904	4,190	7,3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인당 감면액 추이 전망) 2024년 기준 공급가액에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²⁾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1대당 예상 감면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승용자동차 기준판매비율(18%)만큼 차감하여 계산
- 결과적으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개별소비세 예상 감면액이 증가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감면한도액(70만원)만큼 개별소비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

[표 5]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1대당 개별소비세 예상 감면액: 2027~2030년

(단위: 만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하이브리드	70	70	70	70
전기	182	186	189	193
수소전기	318	324	331	337

□ (개별소비세 감면 추이 전망)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실적에 연료별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증가율과 개별소비세 감면액 증가율을 적용한 결과, 동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음

[표 6]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 2027~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하이브리드	3,637	4,062	4,428	4,706
전기	4,012	4,571	5,082	5,511
수소전기	145	165	184	199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2025년 2.0%, 2026년 1.9%, 2027년 2.0%, 2028년 2.0%, 2029년 2.0%, 2030년 2.0%

(3) 추계결과

-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로 4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7년 1조 1,145억원 등 2027~2030년까지 4년간 총 5조 2,483억원(연평균 1조 3,1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액)의 10%가 부과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차종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9조제3항)	-5,200	-5,809	-6,331	-6,730	-24,070	-6,018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9조제6항)	-5,737	-6,537	-7,268	-7,880	-27,422	-6,856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9조제9항)	-207	-236	-263	-285	-991	-248
합 계	-11,145	-12,582	-13,862	-14,895	-52,483	-13,121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세목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개별소비세	-7,794	-8,798	-9,694	-10,416	-36,702	-9,175
교육세	-2,338	-2,640	-2,908	-3,125	-11,011	-2,753
부가가치세	-1,013	-1,144	-1,260	-1,354	-4,771	-1,193
합 계	-11,145	-12,582	-13,862	-14,895	-52,483	-13,121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